

2026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「2026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2일

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

■ 공고대상 사업

- I.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 지원
- II. 여성과학기술단체 융합협력 지원
- III. 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

■ 신청방법

- 사업공고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 -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(www.wiset.or.kr)
- 신청기간 : '26. 1. 12.(월) ~ '26. 2. 10.(화), 14:00까지(마감시간 엄수)
- 신청방법 :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(ehlee@wiset.or.kr)
 - ※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(세부사업, 내역사업명) 후 신청 접수
 - ※ (공통2) 제출서류 및 문의처 참조
 - ※ **마감일에는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**
 - * 이메일 시스템 시간 기준 14:00:59까지의 접수만 인정하며,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 예정
 - *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
■ 사업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 지원 | 02 |
| II. 여성과학기술단체 융합협력 지원 | 06 |
| III. 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 | 10 |
| (공통1) 유의사항 | 4 |
| (공통2) 제출서류 및 문의처 | 5 |
| 붙임 :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| 16 |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 체계 구축과 글로벌 연구 이슈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국제적 연구협력 기반 확충 및 글로벌 역량 강화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적 활동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향상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변화 대응 필요성
 - 기술 패권 경쟁 속 디지털 전환, 신산업 중심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,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확대 지원 필요성 증대
 -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외교 역량 제고 기여
- 국제 협력 기반의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중요성
 - 선진국·신흥국·개도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여성연구자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 및 글로벌 연구 의제 대응력 강화 필요
 - 공동연구, 글로벌 이슈 분석, 연구자 순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여성연구자의 국제적 참여역량 제고 필요

□ 사업내용

- 국제 공동연구 기반 조성
 - 글로벌 연구 현안 대응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적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고,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생태계 조성
- 글로벌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
 - 국제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, 차세대 연구자의 국제 연구진입을 촉진하는 성장 기반 마련
- 국제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정보 확산 기반 구축
 -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, 국내외 연구정보·정책·사례를 공유·확산하여 글로벌 협력 생태계 고도화
 -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DB 기반 협력 사례 확산

2. 지원내용

□ 총 연구개발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(2+2년)*

- * 1단계(1차년도 '26.2.1.-12.31. / 2차년도 '27.1.1.-12.31.), 2단계(1차년도 '28.1.1.-12.31. / 2차년도 '29.1.1.-12.31.)
- * '26년(1차년도) 연구기간은 '26.2월~12월(11개월)로 하되,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*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, 1단계(2년)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후속연구(2년/2단계)를 지원함

□ 선정규모 : 1개 과제

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: 1단계 1차년도(2026년) 500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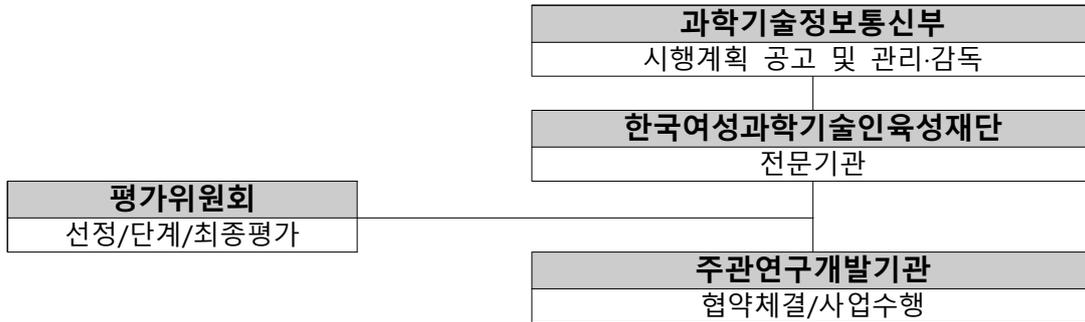
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'26년만 확정이며,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□ 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○ 간접비 비율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준용하여 설정

※ 사용기준 제37조, 제46조, 제55조, 제63조, 제114조 등 기관의 유형 및 특성에 따름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단계별 목적 및 주요 과제

- (1단계)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기반 및 운영체계 구축
 - 국제 여과기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기반 정례적 교류 협력
 -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교류 대상·유형별 협력 기획·운영
 -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정보 및 협력 사례 축적을 위한 관련 DB 구축·운영
- (2단계)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체계의 활용 및 국제협력 성과 확산
 -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교류 기반 협력 연계 확대, 성과 활용 체계 정착
 - 국제 여과기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·정책·사례 공유 범위 확대 및 협력 지속성 강화
 - DB 기반 국제 연구자 연계 및 협력 사례 확산을 통한 국제협력 성과의 가시화

□ 과제 세부내용

- 국제 공동연구 기반 조성
 -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 활동지원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
 - 국제 연구환경 이해를 위한 연구 경험 공유 및 교류 활동 추진
 - 여성과학기술인 연구자 간 국제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주제 발굴 및 연계모델 도출
- 글로벌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
 -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및 정례 협력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
 - 국제 연구협력 활동 사례 축적 및 공유를 통한 연구자 국제활동 기반 관리

- 국제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정보 확산 기반 구축
 - 국제협력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정보·정책사례·협력모델 정리 및 확산 체계 구축
 -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DB 구축·운영 및 국내외 연구·정책정보 연계 관리

「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기본계획(’24-’28)」 관련 세부 실행과제

- 국제여성과학기술인 DB 구축·관리 및 해외 우수 여성연구자 학술교류 활성화
-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R&D 연구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
- 해외 여성연구자의 국내 유치 강화 및 정착 지원
- 신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교류 및 국제 협업 기반 확대
- 공동포럼 개최 및 정책협력 강화 등 글로벌 허브 역할 확대

3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국내 연구개발기관(공공기관, 협회, 유관단체 등)
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혁신법)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(이하 혁신법 시행령)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국내기관
- 3책 5공 : 해당없음
 - ※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 4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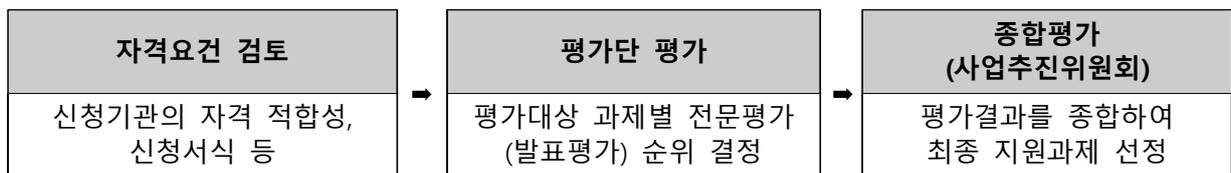
□ 참여제한 :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

※ 혁신법 제32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

- 신청 이후 선정과정 중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이 사실을 전문기관(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)에 알려야 하며,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됨

4. 평가기준

□ 평가절차



□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

- 민·관·학·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
 - ※ 세부사업 유형별 평가대상 과제 수,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

□ 평가방법

- 복수 응모된 경우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 최고점수를 득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하고, 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함
-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과제 확정

□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| | | 배점(100점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수행기관 연구개발 역량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적합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사업관련 이해도 및 기획역량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추진 경험·네트워크·조직운영 역량 | 30점 |
|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 정책보고서 발간(6점) 유사과제 수행 경험(4점) ※ 정량점수표 참고 | 10점 |
| 소계 | | | 40점 |
| 수행계획 창의성 및 충실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도전성·구체성 유사 타과제와의 차별성 세부과업 구성의 구체성·정합성·실행 가능성 (추진체계 및 연차별 계획 충실성 등)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목표 대비 활동의 현실성 | | 40점 |
| 성과 및 파급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수행을 통한 정책·사회·국내외 파급효과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| | 20점 |
| 합 계 | | | 100점 |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수행기관 연구개발 역량 정량점수표(수행실적 증빙제출 필수)

| 구분 | 정의 | 범위 |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국제 정책보고서 발간 | 최근 5년 이내 발간한 정책보고서 중, 보고서 제목 또는 목차에 아래 키워드 중 2건 이상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의 건수 *여성과학기술인 차세대 글로벌역량 국제네트워크 국제정책 *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Next-generation Gdcal Competence Gdcal Networking International Policy | 5건 이상 | 6점 |
| | | 4건 | 5점 |
| | | 3건 | 4점 |
| | | 2건 | 3점 |
| | | 1건 | 2점 |
| | | 해당없음 | 0점 |
| 유사과제 수행 경험 | 최근 5년 이내 수행 과제 중 사업명 또는 내역사업명 또는 과제명에 아래 키워드 포함된 경우 누적 예산 (사업비) 규모 *여성과학기술인 차세대 글로벌역량 국제네트워크 국제정책 *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Next-generation Gdcal Competence Gdcal Networking International Policy | 누적예산 20억원 이상 | 4점 |
| | | 누적예산 10억원 이상 ~20억원 미만 | 3점 |
| | | 누적예산 5억원 이상 ~10억원 미만 | 2점 |
| | | 누적예산 5억원 미만 | 1점 |
| | | 해당없음 | 0점 |

(정량점수 적용 기준)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
- 최근 5년('21.1.1.-'25.12.31.)
- 주관 또는 실질적 운영 역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인정
- 키워드 포함 여부는 신청서에 명시된 증빙자료 기준으로 판단
 - * 모든 과제에 동일한 수준의 키워드 요구는 아님
- 동일 보고서의 개정·재발간은 1건으로 산정
- 동일 과제의 연차별 수행 예산은 누적 합산 가능
 - * 예산 규모는 실적증명서, 협약서, 사업계획서, 정산자료 등 증빙자료 기준으로 확인

II

여성과학기술단체 융합협력 지원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역량 강화와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, 단체 중심의 자율적·지속 가능한 활동 생태계 조성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과학기술분야 여성의 구조적 과소대표성 해소를 위한 단체 기반 확대 필요
 - 유리천장, 경력단절, 고위직 진출 제한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반적인 대표성이 저조
 - 특히, 과기분야 단체 내 여성 임원 비중(약 10%) 및 여성 회장 배출 단체(50개) 등 의사결정 기구 내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여 단체 차원의 대표성 제고가 시급
 - 역량 강화, 경력 지속, 정책 참여를 유기적으로 잇는 여성단체 및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
- 여성과학기술단체 기반의 지원체계 강화 및 현장 참여 확대 필요
 - 연구현장 이슈는 개별 기관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이 효과적임.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의견이 투영된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

□ 사업내용

- 여성과학기술단체 기반의 역량 강화 및 현장 참여 확대
 - 여성과학기술단체가 학술·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하고, 단체 차원의 정책·현안 대응 및 구성원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
-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조직성장 및 협력 생태계 조성
 - 전공·분야·지역별 여성과학기술단체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,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단체 생태계 구축
- 과학기술계 다양성·포용성 문화 확산 기반 마련
 - 여성과학기술단체의 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다양성·포용성 관련 성과를 공유·확산하고, 과학기술계 전반으로의 홍보 및 확산 체계 구축

2. 지원내용

□ 총 연구개발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(2+2년)*

- * 1단계(1차년도 '26.2.1.-12.31. / 2차년도 '27.1.1.-12.31.), 2단계(1차년도 '28.1.1.-12.31. / 2차년도 '29.1.1.-12.31.)
- * '26년(1차년도) 연구기간은 '26.2월~12월(11개월)로 하되,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*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, 1단계(2년)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후속연구(2년/2단계)를 지원함

□ 선정규모 : 1개 과제

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: 1단계 1차년도(2026년) 500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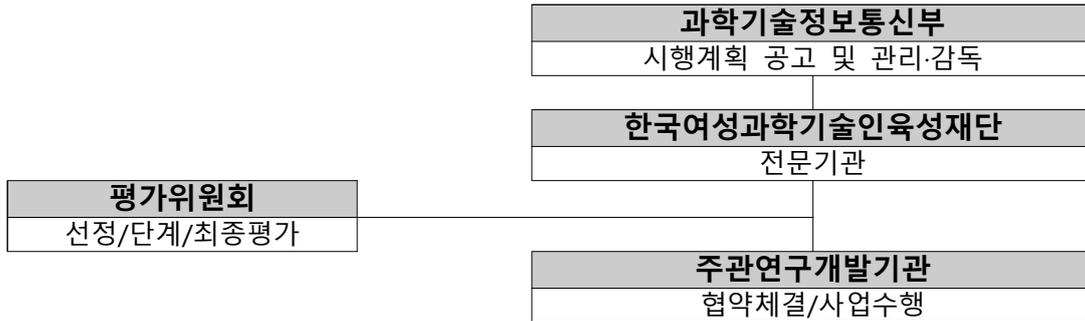
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'26년만 확정이며,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□ 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○ 간접비 비율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준용하여 설정

※ 사용기준 제37조, 제46조, 제55조, 제63조, 제114조 등 기관의 유형 및 특성에 따름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단계별 목적 및 주요 과제

○ (1단계) 여성과학기술단체 활동을 위한 조직·협력·운영 기반 구축

- 여성과학기술단체의 활동 현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별 역할과 지원 방향을 설정, 기획에 반영

- 단체 간 교류·연계 활동을 통해 조직 운영 및 활동 경험 공유와 단계적 협력기반 형성

- 연구환경, 조직문화 등 단체 차원의 주요 현안 중심 대응 영역 구체화

○ (2단계) 여성과학기술단체 협력·지원 강화로 현장 중심 포용성 문화 확산 및 정착

- 단체 간 협력 활동의 연계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정착

- 단체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·확산하여 단체 기반 지원 모델의 활용성 제고

- 연구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콘텐츠 현장 확산

□ 과제 세부내용

○ 여성과학기술단체 기반의 역량 강화 및 현장 참여 확대

- 여성과학기술단체 현안·수요를 반영한 정책과제 도출 및 단체 대외 참여 활동 추진

-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, 일·가정 양립 등 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 영역 발굴 및 관련 사례 확산

○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조직성장 및 협력 생태계 조성

- 전공·분야별 단체의 역량 강화 활동 운영 및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

- 단체 간 지식·성과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및 협력모델 정리

- 국내외 여성과학기술단체와의 연계 기반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

- 과학기술계 다양성·포용성 문화 확산 기반 마련
 - 포용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대중·현장 확산
 -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단체 중심의 다양성·포용성 실천 활동 운영
 - 단체 기반 캠페인·홍보·공유 프로그램 기획 및 확산

「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기본계획(’24-’28)」 관련 세부 실행과제

- 재외한인 여성과학기술단체 협력 확대
- STEM 분야 현안의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역할 제고

3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국내 연구개발기관(공공기관, 협회, 유관단체 등)
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혁신법)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(이하 혁신법 시행령)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국내기관
- 3책 5공 : 해당없음
 - ※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 4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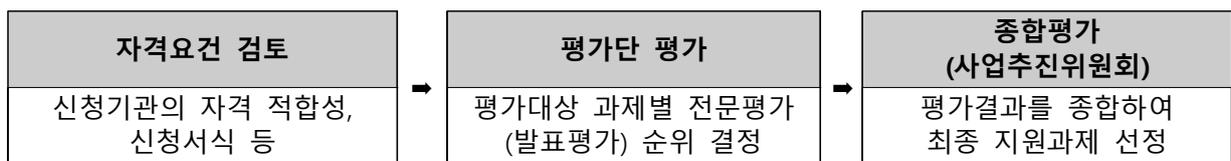
□ 참여제한 :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

※ 혁신법 제32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

- 신청 이후 선정과정 중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이 사실을 전문기관(한국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)에 알려야 하며,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됨

4. 평가기준

□ 평가절차



□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

- 민·관·학·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
 - ※ 세부사업 유형별 평가대상 과제 수,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

□ 평가방법

- 복수 응모된 경우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 최고점수를 득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하고, 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함
-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과제 확정

□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| | | 배점(100점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수행기관 연구개발 역량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적합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사업관련 이해도 및 기획역량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추진 경험·네트워크·조직운영 역량 | 30점 |
|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성과학기술단체 지원(6점) 유사과제 수행 경험(4점) ※ 정량점수표 참고 | 10점 |
| 소계 | | | 40점 |
| 수행계획 창의성 및 충실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도전성·구체성 유사 타과제와의 차별성 세부과업 구성의 구체성·정합성·실행 가능성 (추진체계 및 연차별 계획 충실성 등)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목표 대비 활동의 현실성 | | 40점 |
| 성과 및 파급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수행을 통한 정책·사회·국내외 파급효과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| | 20점 |
| 합 계 | | | 100점 |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수행기관 연구개발 역량 정량점수표(수행실적 증빙제출 필수)

| 구분 | 정의 | 범위 |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여성 과학기술 단체 지원 | 최근 5년 이내 수행 과제 중 여성과학기술단체 (국내외학회·여성위원회 등) 협력 프로그램 및 단체 지원 건수 | 100건 이상 | 6점 |
| | | 80건 이상~100건 미만 | 5점 |
| | | 60건 이상~80건 미만 | 4점 |
| | | 40건 이상~60건 미만 | 3점 |
| | | 20건이상~40건 미만 | 2점 |
| | | 1건이상~20건 미만 | 1점 |
| | | 해당없음 | 0점 |
| 유사과제 수행 경험 | 최근 5년 이내 수행 과제 중 사업명 또는 내역사업명 또는 과제명에 아래 키워드 포함된 경우 누적 예산 (사업비) 규모 *여성과학기술단체 여성과학기술인 여성리더십 과학소통 다양성과 포용성 *Women in STEM Women's Science & Technology Organizations, Women Leadership, Science Communication, Diversity and Inclusion | 누적예산 20억원 이상 | 4점 |
| | | 누적예산 10억원 이상 ~20억원 미만 | 3점 |
| | | 누적예산 5억원 이상 ~10억원 미만 | 2점 |
| | | 누적예산 5억원 미만 | 1점 |
| | | 해당없음 | 0점 |

(정량점수 적용 기준)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
- 최근 5년('21.1.1.-'25.12.31.)
- 주관 또는 실질적 운영 역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인정
- 키워드 포함 여부는 신청서에 명시된 증빙자료 기준으로 판단
 - * 모든 과제에 동일한 수준의 키워드 요구는 아님
- 동일 과제의 연차별 수행 예산은 누적 합산 가능
 - * 예산 규모는 실적증명서, 협약서, 사업계획서, 정산자료 등 증빙자료 기준으로 확인

Ⅲ

젠더혁신분석 연구 지원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연구·기술정책에서의 젠더 관점 반영과 젠더혁신 기반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의 포용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, 국민의 삶과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포용적 연구혁신 기반 수립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과학기술 전반에서 젠더 관점 반영의 중요성 확대
 - OECD·EU 등 주요국은 연구·기술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핵심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, 호라이즌 유럽(Horizon Europe)의 성별다양성 참여 조건 등 젠더 기반 연구체계가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
 - 국내에서도 연구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기술 영역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젠더혁신 기반 연구의 필요성 증대
- 연구·정책 영역에서 젠더 기반 분석역량 제고 요구
 - 연구개발 전주기에서 젠더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, 연구결과의 활용성·신뢰성 저하 및 정책 대응의 한계 발생 우려
 - 젠더혁신 이해·적용 역량의 분야별 편차 축소 및 젠더혁신 확산을 위한 교육·지표·사례 중심의 전문성 강화 필요
- 국제 젠더혁신 정책동향에의 대응 및 국내 확산 기반 필요
 - 젠더서밋(Gender Summit), UNESCO 등 국제기구는 젠더혁신 연구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 역시 글로벌 협력과 연계한 젠더혁신 연구 기반 확충이 요구됨
 - 연구회·전문가집단 중심의 지속적 연구교류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

□ 사업내용

- 연구개발 전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젠더관점 기반 구축
 - 성별·사회적 요인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석체계,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
- 젠더혁신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 및 협력 확산
 - 국내외 전문가·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젠더혁신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자·실무자 대상 인식 제고·실천 기반 확장
- 젠더혁신의 대중 인식 확산 및 접근성 강화
 - 국민 대상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·자료·콘텐츠 등을 개발·확산하여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

2. 지원내용

□ 총 연구개발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(2+2년)*

- * 1단계(1차년도 '26.2.1.-12.31. / 2차년도 '27.1.1.-12.31.), 2단계(1차년도 '28.1.1.-12.31. / 2차년도 '29.1.1.-12.31.)
- * '26년(1차년도) 연구기간은 '26.2월~12월(11개월)로 하되,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*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, 1단계(2년)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후속연구(2년/2단계)를 지원함

□ 선정규모 : 1개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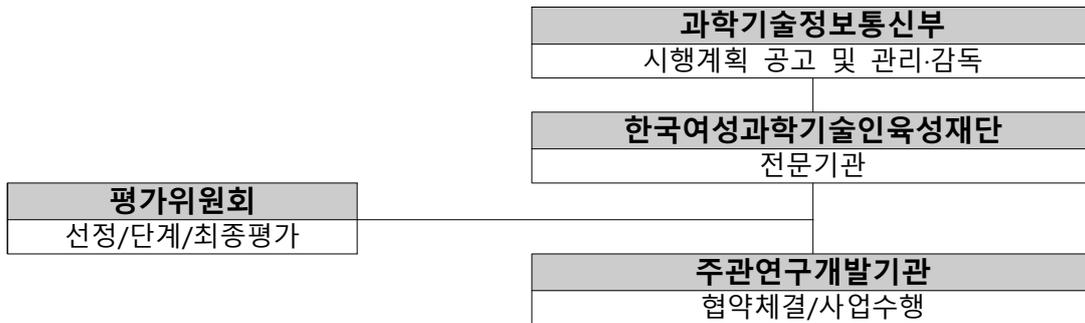
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: 1단계 1차년도(2026년) 900백만원

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'26년만 확정이며,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
□ 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- 간접비 비율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준용하여 설정
- ※ 사용기준 제37조, 제46조, 제55조, 제63조, 제114조 등 기관의 유형 및 특성에 따름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단계별 목적 및 주요 과제

- (1단계) 연구개발 과정에 적용 가능한 젠더관점 분석·정책·가이드 기반 구축
 -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젠더관점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 적용 지점과 활용 범위 발굴
 - 대상별 젠더관점 분석 도구, 가이드, 지표 등을 활용가능 형태로 정비 및 적용
 - 국내외 젠더혁신 관련 연구·정책 사례를 연구현장 적용 관점으로 정리·축적
- (2단계) 젠더관점의 연구현장 적용 및 확산
 - 축적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·정책 현장 내 활용 범위 확대
 - 교육·자료·콘텐츠를 통한 젠더혁신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상별 활용 구조 고도화
 - 젠더혁신 관련 연구·정책 활용 사례를 축적·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확산 기반 마련

□ 과제 세부내용

- 연구개발 전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젠더관점 기반 구축
 - 젠더 관점 연구 성과지표·평가기준·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 및 정비
 - 법·제도·정책 개선 필요사항 검토를 통한 R&D 품질 관리 기반 마련
 - 젠더관점 적용 사례 및 분석 결과의 수집·정리·활용체계 구축

- 과학기술 전분야 젠더혁신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 및 협력 확산
 - 연구자·재직자 등 대상별 젠더혁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젠더 기반 연구방법론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연구 현장 적용 활동 추진
 - 국내외 관련 기관·전문가와의 교류 및 동향 공유를 통한 협력 기반 확대
- 젠더혁신의 대중 인식 확산 및 접근성 강화
 - 연구자·정책 담당자 대상 이해도 제고 교육 및 실천 가이드 제공
 - 일반 국민 대상 콘텐츠·자료·교육 개발 및 확산

「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기본계획(’24-’28)」 관련 세부 실행과제

- 연구기관 조직문화와 연구자 과제수행 측면 젠더 다양성이 고려되는 젠더혁신 확산 체계 마련
- 성별 등 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창출 및 상용화가 필요한 연구분야 법적 근거 마련
- 수요자 맞춤형 젠더혁신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확산
-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젠더혁신 글로벌 이니셔티브 연대 구축

3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국내 연구개발기관(공공기관, 협회, 유관단체 등)
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혁신법)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(이하 혁신법 시행령)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국내기관
- 3책 5공 : 해당없음
 - ※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 4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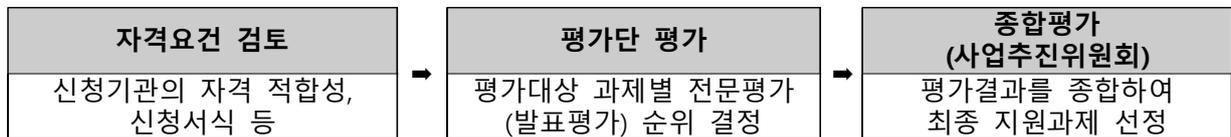
□ 참여제한 :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

※ 혁신법 제32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

- 신청 이후 선정과정 중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이 사실을 전문기관(한국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)에 알려야 하며,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됨

4. 평가기준

□ 평가절차



□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

- 민·관·학·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
 - ※ 세부사업 유형별 평가대상 과제 수,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

□ 평가방법

- 복수 응모된 경우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 최고점수를 득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하고, 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함
-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과제 확정

□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| | 배점(100점)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수행기관 연구개발 역량 | 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적합성 •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사업관련 이해도 및 기획역량 •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추진 경험·네트워크·조직운영 역량 | 30점 |
| | 정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젠더혁신 연구지원(6점) • 유사과제 수행 경험(4점) ※ 정량점수표 참고 | 10점 |
| 소계 | | 40점 | |
| 수행계획 창의성 및 충실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도전성·구체성 • 유사 타과제와의 차별성 • 세부과업 구성의 구체성·정합성·실행 가능성 (추진체계 및 연차별 계획 충실성 등) •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목표 대비 활동의 현실성 | 40점 | |
| 성과 및 파급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수행을 통한 정책·사회·국내외 파급효과 •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| 20점 | |
| 합 계 | | 100점 | |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수행기관 연구개발 역량 정량점수표(수행실적 증빙제출 필수)

| 구분 | 정의 | 범위 | 점수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젠더혁신 연구지원 | 최근 5년 이내 수행 과제 중 과학기술 전분야 젠더 혁신 교육 및 젠더혁신 연구지원 건수 | 100건 이상 | 6점 |
| | | 80건 이상~100건 미만 | 5점 |
| | | 60건 이상~80건 미만 | 4점 |
| | | 40건 이상~60건 미만 | 3점 |
| | | 20건이상~40건 미만 | 2점 |
| | | 1건이상~20건 미만 | 1점 |
| | | 해당없음 | 0점 |
| 유사과제 수행 경험 | 최근 5년 이내 수행 과제 중 사업명 또는 내역사업명 또는 과제명에 아래 키워드 포함된 경우 누적 예산 (사업비) 규모 *젠더혁신 성별 특성 분석 전다혁신정책 역량 강화 전다혁신 인프라 *Gendered Innovations, Sex/Gender analysis Policy for Gendered Innovations, Empowerment Equity, Diversity, Inclusion(EDI), Gendered Innovations Infrastructure | 누적예산 20억원 이상 | 4점 |
| | | 누적예산 10억원 이상 ~20억원 미만 | 3점 |
| | | 누적예산 5억원 이상 ~10억원 미만 | 2점 |
| | | 누적예산 5억원 미만 | 1점 |
| | | 해당없음 | 0점 |

(정량점수 적용 기준)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
- 최근 5년('21.1.1.-'25.12.31.)
- 주관 또는 실질적 운영 역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인정
- 키워드 포함 여부는 신청서에 명시된 증빙자료 기준으로 판단
 - * 모든 과제에 동일한 수준의 키워드 요구는 아님
- 동일 과제의 연차별 수행 예산은 누적 합산 가능
 - * 예산 규모는 실적증명서, 협약서, 사업계획서, 정산자료 등 증빙자료 기준으로 확인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 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 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수행기관 연구개발역량 정량점수 확인에 필요한 과제 수행경력 관련 증빙 미제출 시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 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공통2

제출서류 및 문의처

□ 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(PDF, 한글)화하여 압축파일(zip 등) 1개로 송부

- 대용량 파일(메일 첨부 불가)의 경우, pdf 용량압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압축 후 송부 원칙
- ※ 압축 후에도 송부 불가능한 경우, 담당자 문의 요망

| 번호 | 서류명 | 서식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(필수) | 연구개발계획서 | 붙임1 |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|
| 2 (필수) |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붙임2 별첨1 |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|
| 3 (필수) |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,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| 붙임2 별첨2 | 모든 기관(주관·공동·위탁) 공통 날인하여 제출 |
| 4 (필수) |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| 붙임2 별첨3 | 모든 기관(주관·공동·위탁) 공통 날인하여 제출 |
| 5 (필수) | 사업자등록증 | - | 모든 기관(주관·공동·위탁) 제출 |
| 6 (필수) |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| - | 모든 기관(주관·공동·위탁) 최근 3개년도(23~25) 제출 ※ 비영리기관 제외 |
| 7 (필수)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| - | 모든 기관(주관·공동·위탁) 최근년도 기준 제출 ※ 비영리기관 제외 |
| 8 |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(실적증명서 등) | 붙임2 참고1,2 등 해당내역 |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※ 수행기관 연구개발역량 정량점수 증빙용 |

□ 문의처

-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기획예산팀(02-6411-1016/ehlee@wiset.or.kr)

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| 비목 | 세목 | 사용 용도 및 유의사항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직접비 | 인건비 | <p>[사용용도]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</p> <p>* 인건비계상률 = 해당 연도(월)에 참여연구자·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1호·제2호) ÷ 참여연구자·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(월) 급여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)</p> <p>※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</p> <p>※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</p> <p>※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연(월) 급여는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,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,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</p> <p>-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(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)</p> <p>-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</p> <p>- 비영리기관 연구부서*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(세부사항 상동)</p> <p>*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(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)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, 학부, 학과 및 전문연구소(센터) 등</p> <p>*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, 전문연구소(센터) 등</p> <p>[유의사항]</p> <p>-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40% 범위 이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, 선정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</p> |
| 학생인건비 | 인건비 | <p>[사용용도]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</p> <p>* “학생연구자”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.</p> <p>가. 「고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·학사학위과정·석사학위과정·학석사통합과정·박사학위과정·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(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을 포함하며,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)</p> <p>나.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</p> <p>1.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(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)</p> <p>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</p> <p>1) 법 제2조 제3호나목의 대학</p> <p>2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</p> <p>3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교와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</p> |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·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- 1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2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3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 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
- 다. 나목1)부터 3)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2.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(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[유의사항]

- 학생연구자 **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% 이내**에서 관리
 - ※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(학생인건비 포함) 및 장학금, 강사·겸임교원·초빙교원 인건비,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
 - ※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,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
-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(통합관리계정의 지급액 포함)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**학위과정별 금액*의 10% 이상이 되도록 관리**
 - * 학사과정(전문학사과정 포함): 월 130만 원,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: 월 220만 원,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: 월 300만 원

연
구
시
설
·
장
비
비

[사용용도]

- 연구시설·장비 구입·설치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비,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
- 연구시설·장비 임차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임차비
- 연구시설·장비 운영·유지비 : 유지·보수비,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(연구시설·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·설치하는 비용 포함)
- 연구인프라 조성비 :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·시설의 매입·임차·조성비, 설계·건축·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·설비비(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, 설계, 건설,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)

[유의사항]
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및 구입·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)인 연구시설·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는 연구시설·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에 등록된 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)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·설치 또는 임차 완료(검수완료)하여야 함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 구 재 료 비 | <p>[사용용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재료 구입비 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·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· 연구재료 제작비 :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(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)비용 |
| 연 구 활 동 비 | <p>[사용용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: 기술·특허·표준 정보 조사·분석, 원천·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·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(국외 소재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에 지급하는 비용 포함):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(원고료, 강사료, 자문료 등 포함)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· 회의비: 회의장 임차료, 숙기료,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·세미나 개최 비용 · 출장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(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·전보·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) · 소프트웨어 활용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·네트워크의 이용료 ·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· 연구실운영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· 연구인력 지원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·훈련 비용, 학회·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(특근) 식대 ·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: 외국에 소재한 정부·기관·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,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· 종합사업관리비 :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·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· 그 밖의 비용 :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·복사·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,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*, 공공요금, 일용직(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)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<p>* 수수료 : 환전, 통관, 신문 광고, 위탁정산,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</p> <p>[유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(현물 포함)는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(현물 포함) 협약금액의 40% 범위 내에서 사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기술도입비 :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도입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) 전문가활용비 :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,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3)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: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|
| 연 구 수 당 | <p>[사용용도] ·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</p> <p>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(아래 1)+2)+3)+4))의 20%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</p> <p>1)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(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,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)</p> <p>2) 학생인건비(전체 연구개발기간(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)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)</p> <p>3) 다음의 계산식*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 *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×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※ 미지급인건비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 명시하여야 함</p> <p>4)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(연)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</p> <p>[유의사항] -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(연구개발과제 수행 장려 개념) -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</p> |
| 위 탁 연 구 개 발 비 | <p>[사용용도]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</p> <p>[유의사항] -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%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</p> |
| 국 제 공 동 연 구 개 발 비 | <p>[사용용도]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</p> <p>[유의사항] 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*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*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 확정</p> |
| 간 접 비 | <p>[사용용도] · 인력지원비 -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-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</p> |

- 「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7조 제1호 가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
 - 일시적 연구중단(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) 기간 동안의 급여
 -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
- 정부출연연구기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 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
 - 3개월 이상의 교육·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
 -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
 - 일시적 연구중단(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) 기간 동안의 급여
 -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
-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
 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
 - 「국민연금법」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
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
- 연구지원비
 - 기관 공통 비용 :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
 - 사업단 운영비 :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·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
 - 기반시설·장비 구축·운영비 :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
 -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
 -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·장비 구입비
 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
 - 연구실안전관리비 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
 -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
 - 연구보안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
 -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, 보안취약점 진단,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
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
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

-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
- 연구윤리활동비 : 연구윤리규정 제정·운영,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
- 연구활동지원금 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·전자정보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(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·평가 비용 등을 포함)
- 성과활용지원비
 - 과학문화활동비 :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
 -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
 - 강연·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
 - 홍보전문가 양성
 -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
 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
 -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
 -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
 -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
 -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동,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
 -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 :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 회사, 학교기업,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
[유의사항]

- 인력지원비
 -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* 을 계상할 수 있음. 다만, 참여연구자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
 - *직접비로 계상 불가
- 연구지원비
 - 기반시설·장비 구축·운영비 :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,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·장비 구입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
 - 연구실안전관리비
 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3항,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
 -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
 - 연구활동지원금 :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